

- 최홍우(성동1, 한나라당)
- 하종삼(노원3, 한나라당)
- 한응용(송파1, 한나라당)
- 김홍식(강북3, 민주당)

【 위원장단 】

□ 선 임 : 2002.9.9(제135회 임시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 위원장 1인, 간사 2인

- 위 원 장 : 장수원 (광진3, 한나라당)
- 간 사 : 하종삼 (노원3, 한나라당), 김홍식 (강북3, 민주당)

다.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2002.8.30~2003.2.28)

라. 구성목적

- 불합리한 관련규정 발굴, 개정 건의
- 국가사무중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로의 전환 추진
- 국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위상 제고방안 강구 등

II. 위원회 활동내역

가. 회의 개최(2회)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제135회 임시회)

- 일 시 : 2002.9.9(月)
- 장 소 : 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

- 선임결과
 - 위 원 장 : 장수원(한나라당)
 - 간 사 : 하종삼(한나라당), 김홍식(민주당)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제136회 임시회)

- 일 시 : 2002.10.19(土) 11:00
- 장 소 :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

- 보 고 자 :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 보고내용
 - 국제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확충 추진
 - 고질·상습체납자 사법기관 고발
 - 복식부기 도입 검토
 - 제16대 대통령선거 법정사무 추진
 - 고위공직자 특별연수 실시

나. 기타 추진사항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제23회 정례회)

- 일 시 : 2002.12. 7(土) 12: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2002년도 운영실적 및 2003년도 운영계획 보고 등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호 중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7조의 2 내지 제7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기획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방재기획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3(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4(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소방방재본부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 재난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계정(이하 “재해계정”이라 한다),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 (구성)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 2. 재해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
-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
-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용도)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②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③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가. 재해계정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건설기획국장
 - 나. 구호계정 - 시의 복지여성국장
 - 다. 재난계정 - 시의 소방방재본부장
-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2(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기획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방재기획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3(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4(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소방방재본부의 기금담당사무원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조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